

# I. 예산편성 기준경비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준경비
- ▶ 법령 및 훈령에 의한 경비
- ▶ 강사의 수당 등 지급기준
- ▶ 우리구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준경비

## I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준경비

## 1 지방의회 관련경비

| 구분                           | 경비 성격  | 기준액   | 비고  |
|------------------------------|--|---|---|
| 1) 의정운영공통<br>경비<br>(205-05)  |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br>의의 공적인 의정활동<br>을 수행하는데 필요한<br>공통적인 경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원1인당 연간 4,800천원</li> <li>※ 예결특위 의원 1인당 1,000천원<br/>별도계상 가능</li> <li>- 증액편성: 최근 3년간 의정 활동<br/>실적 평균증가율 7%<br/>범위내에서 증액편성</li> </ul>                 | 행정자치부 기준  |
| 2)의회운영<br>업무추진비<br>(205-06)  |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br>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br>수행을 위한 제경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 장 : 월 4,200천원</li> <li>◦부 의 장 : 월 2,100천원</li> <li>◦상임위원장 : 월 1,300천원</li> <li>※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br/>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기<br/>준액을 적용 계상 가능</li> </ul> | 시·군·자치구의회의<br>의장단에 대한 기준<br>액은 행정자치부 기<br>준액(기타 사도) 범<br>위 내에서 사·도지<br>사가 자체 기준을<br>설정하여 통보 |
| 3)지방의회의원<br>국외여비<br>(205-04) |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br>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br>여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정수 × 2,000천원(기준액)</li> <li>※ 단,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br/>자매결연 사유로 연간 편성<br/>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br/>추가 편성 가능</li> </ul>                                     | 행정자치부 기준  |

## 2 업무추진비

###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 ① 경비성격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비,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② 기준액 및 편성부서

(단위 : 천원)

| 구분    | 구청장   | 부구청장   | 국장    | 보건소장  | 동장   |
|-------|---|--------|-------|-------|--|
| 년간기준액 | 78,100  | 56,100 | 3,300 | 3,300 | · 인구 8만이상 9,200<br>· 인구 8만미만 7,900<br>· 인구 3만미만 6,600<br>※ 2015년 9월 30일 기준 |
| 편성부서  | 구본청: 총무과, 동주민센터: 자치행정과<br>의회.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보건위생과 |        |       |       |  |

###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 ① 경비성격

-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② 적용기준 : 소속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기준(2015. 10. 1 기준)

#### ③ 기준액 및 편성부서

| 구분            | 기준 (1인당 연간금액) |          |            |          |         | 편성부서           |
|---------------|---------------|----------|------------|----------|---------|----------------|
| 구본청<br>구의회사무국 | 100명까지        | 101~300명 | 301~600명   | 601~800명 | 801명이상  | 총무과<br>구의회사무국  |
|               | 80,000원       | 60,000원  | 45,000원    | 30,000원  | 15,000원 |                |
| 동주민센터<br>보건소  | 100명까지        | 101~400명 | 401~1,000명 | 1,000명이상 |         | 자치행정과<br>보건위생과 |
|               | 40,000원       | 30,000원  | 25,000원    | 20,000원  |         |                |

### ③ 시책업무추진비(203-03)

- ① 편성방법 :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 ② 기준액 : 일정공식에 의해 산정
- ※ 시·군·자치구의 기준액은 시·도에서 결정하되, 시·군·자치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정계수 적용
- ③ 증액편성 : 국가단위 행사 개최, 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시·군·구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시도)와 협의를 거쳐 증액 편성

### ④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 ① 경비성격
-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 지급

#### ② 기준액 및 편성부서

(단위 : 천원)

| 구 분             | 월 액 | 연 액   | 편 성 부 서  |
|-----------------|-----|-------|--|
| ○ 구 청 장         | 650 | 7,800 | ○ 구 본청·동 : 총무과<br>○ 구 의 회 : 의회사무국<br>○ 보 건 소 : 보건위생과<br>○ 주차장 특별회계 : 교통지도과 |
| ○ 부구청장          | 600 | 7,200 |  |
| ○ 4 급           |     |       |  |
| -기 관 장(보건소장)    | 400 | 4,800 |  |
| -보조기관(국 장)      | 350 | 4,200 |  |
| ○ 5 급           |     |       |  |
| -기 관 장(동 장)     | 150 | 1,800 |  |
| -보조기관(과장, 전문위원) | 100 | 1,200 |  |
| ○ 직장예비군 중대장     | 80  | 960   |  |

- 주) ① 구의회 전문위원 등은 『당해직급 보조기관』의 기준액 적용
- ② 공로연수중인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5 부서운영 업무추진비(203-04)**

① 경비성격

-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② 기준액(2015. 10. 1일 정원 기준)

| 구 분           | 기 준 액             | 편 성 부 서  |
|---------------|-------------------|--|
| ◦ 정원5인이하 실·과  | 월 100,000원        | ◦ 구본청·보건소 : 각 실·과<br>◦ 동 : 자치행정과<br>◦ 의회 : 의회사무국 |
| ◦ 정원15인이하 실·과 | 월 250,000원        |  |
| ◦ 정원30인이하 실·과 | 월 350,000원        |  |
| ◦ 정원31인이상 실·과 | 1인초과시 : 5,000원 추가 |  |

**6 특정업무경비(204-03)**

① 경비성격

- 특수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 지급

② 기준액 및 편성부서

(단위 : 천원)

| 구 분          | 대 상  | 기준액<br>(월액) | 편 성 부 서  |
|--------------|--|-------------|--|
| ◦ 특사경수사활동비   | ◦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6급이하)  | 200,000     | ◦ 구본청·동 : 총무과<br>(단,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br>◦ 구의회 : 의회사무국<br>◦ 보건소 : 보건위생과 |
| ◦ 감사담당공무원    | ◦ 구 감사업무담당공무원(5급이하)  | 80,000      |  |
| ◦ 세무담당공무원    | ◦ 구 세무담당공무원(과장이하)  | 100,000     |  |
| ◦ 예산담당공무원    | ◦ 구 예산담당공무원(과장이하)  | 150,000     |  |
| ◦ 여론·동향전담공무원 | ◦ 구 여론동향 전담공무원(6급이하)   | 100,000     |  |
| ◦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 ◦ 구 공무원단체업무담당공무원(5급이하)   | 60,000      |  |
| ◦ 대민활동비      | ◦ 구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br>- 전임계약직 5급상당이하,<br>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br>직원 포함(동근무수당 지급<br>대상자 제외) | 50,000      |  |

주) 1) 감사는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세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예산은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 전담조직근무자에 대하여 지급가능

2)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전임계약직공무원중 직급보조비를 5급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4) 여론·동향,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은 구 본청 단위로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설치된 경우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

5) 특사경수사활동비의 지급대상은 자치경찰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전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계 또는 팀)이 구성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이하, 시군구 6급이하)

### 3 지 방 보 조 금

#### □①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해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② 편성원칙 : 한도액 범위내 편성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 보조금 한도액: 201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63페이지 참조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  $\times$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 적용기준: 일반+기타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부담금 포함) 보조금 제외

### 4 통·리 반장활동보상금

① 경비성격 :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② 기 준 액

- 통·리장 : 기본수당 월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퍼센트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 연 50,000원

## 5 2016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①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 ② 기 준 액

- 제한 도시형 기초단체(69개, 자치구) : 1인당 평균 기준액 1,492천원

###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15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15년과 동일하게 편성

## 6 일·숙직비

①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 ② 기 준 액

| 구 분 | 단위  | 단가         |
|-----|-----|------------|
| 일직비 | 1일당 | 50,000원 이내 |
| 숙직비 | 1야당 | 50,000원 이내 |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 7 교육강사 수당

① 경비성격 : 공무원 교육원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직장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의 수당

② 기 준 액 :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별첨 참조)

○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함

※ 강사의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이 가능함

## 8

## 월액여비

- ① 경비성격 :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 ② 기 준 액 : 월 150,000원 범위 내
  -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월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운영
  - 다만, 출장 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



## II 법령 및 훈령에 의한 경비

### 1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5년 기준

| 등 급   | 월 임 금        |
|-------|--------------|
| 책임연구원 | 월 3,018,785원 |
| 연구원   | 월 2,314,762원 |
| 연구보조원 | 월 1,547,342원 |
| 보조원   | 월 1,160,546원 |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03호, 2015.4.10)

#### < 학술용역 표준 학술용역 기간 >

| 산정근거                 | 학술용역사업비           | 표준 학술용역기간 |
|----------------------|-------------------|-----------|
| 수행기간별<br>평균<br>학술용역비 | 5천만원 미만           | 3개월 이내    |
|                      | 5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5개월 이내    |
|                      |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7개월 이내    |
|                      | 1억원 이상            | 10개월 이내   |

### 2 최저임금 단가

#### ○ 최저임금액

| 업종      | 결정단위 | 시 간 급  | 비고                         |
|---------|------|--------|----------------------------|
| 모 든 산 업 |      | 6,030원 | 2015년 5,580원 대비<br>8.1% 인상 |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의거 매년 발표하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름

#### ○ 업종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6. 1. 1. ~ 2016.12.31.

# Ⅲ 강사의 수당 등 지급기준

## 1 중앙공무원교육원

### 1. 강사수당

#### 가. 일반 지급기준

| 구 분                             | 지급기준      | 지급액<br>(만원) | 지 급 대 상  |   |  |
|---------------------------------|-----------|-------------|--|---|--|
|                                 |           |             | 공공분야   | 민간분야  |  |
| 일<br>반                          | 특강 (I)    | 1시간당        | 100<br>이내  | ◦ 전·현직 총리(급) 및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
|                                 | 특강 (II)   | 최초1시간       | 40   | ◦ 전·현직 장관(급)<br>◦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br>◦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           | 초과 (매시간)    | 30   |   |  |
|                                 | 특강 (III)  | 최초1시간       | 30   | ◦ 전·현직 차관(급)<br>◦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br>◦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 하는 자 |
|                                 |           | 초과 (매시간)    | 20   |   |  |
|                                 | 일반 (I)    | 최초1시간       | 23   | ◦ 전·현직 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br>◦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
|                                 |           | 초과 (매시간)    | 12   | ◦ 특강 및 일반강의2 이외의 강사                                 |  |
|                                 | 일반 (II)   | 최초1시간       | 12   | ◦ 전·현직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
| 초과 (매시간)                        |           | 10          |  |   |  |
| 보조 강사                           | 1시간당      | 4           |  |   |  |
| 정<br>보<br>화<br>교<br>육           | 정보화 (I)   | 최초1시간       | 15   | ◦ 전·현직 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           | 초과 (매시간)    | 10   |   |  |
|                                 | 정보화 (II)  | 최초1시간       | 10   |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br>( )는 스마트활용강사에 적용                                  |
|                                 |           | 초과 (매시간)    | 8<br>(5)   |   |  |
|                                 | 정보화 (III) | 최초1시간       | 8  |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br>( )는 스마트활용강사에 적용   |
| 초과 (매시간)                        |           | 7<br>(5)    |  |   |  |
| 사이버 정보화                         | 교육기간내 1일당 | 2           |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및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   |  |
| 보조 강사                           | 1시간당      | 4           |  |   |  |
| 글<br>로<br>벌<br>역<br>량<br>교<br>육 | 전체 강의     | S급          | 20   | ◦ 외국어교육의 최고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
|                                 |           | A급          | 15   |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br>◦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
|                                 |           | B급          | 13   |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
|                                 |           | C급          | 11   | ◦ 전체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  |
|                                 | 분임 강의     | A급          | 11   |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br>◦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

|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br>(만원) | 지급대상   |      |
|-------|-----------|-------------|--|------|
|       |           |             | 공공분야   | 민간분야 |
|       | B급        | 10          |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
|       | C급        | 9           | ◦ 분임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      |
| 사이버교육 | 교육기간내 1일당 | 2           |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및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      |

-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함.
- ※ 외국어 교육과정의 경우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수당은 일반항목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며, 20명 이상의 분임강의는 전체강의 강사로 적용
- ※ 사이버교육 강사수당은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 나.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

|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br>(만원)      | 지급대상   |
|--------|-------------|------------------|--|
| 퍼실리테이터 | 1~3시간 (시간당) | 23               |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br>◦ 전·현직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br>◦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        |             |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  |
|        | 1~3시간 (시간당) | 20               | ◦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br>◦ 전·현직 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br>◦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        |             |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  |
|        | 1~3시간 (시간당) | 13               | ◦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br>◦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br>◦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
|        |             |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  |
|        | 3시간 (시간당)   | 11               | ◦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전문강사 경력자<br>◦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br>◦ 조교수, 전임강사(급) 대학교수  |
|        |             |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  |

- ※ FT 요건 : 교육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 다. 지도·평가 등 강사수당

| 지급기준            | 지급액<br>(만원)    | 지급대상  |    |
|-----------------|----------------|---|----|
| 1시간당            | 10             | ◦ 분임활동을 지도, 평가하는 강사<br>◦ 분임발표에 참석하여 평가하는 강사<br>◦ 중앙교육훈련 경연대회 심사위원                   |    |
| 1회당             | 10             | ◦ E-mail, 서면으로 요청시  |    |
| 1편당             | 5              | ◦ 경연대회 참가 작품 서면심사   |    |
| 1부당             | 10페이지 미만       | ◦ 단체(분임·팀 등) 보고서 평가자(단, 페이지수, 난이도,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 가능)              |    |
|                 | 10 이상~30페이지 미만 |   | 2  |
|                 | 30페이지 이상       |   | 4  |
| 기본              | 5부 이내          | ◦ 개인 보고서(논술시험 등)평가자(단, 1부 추가당 지급액은 평가 난이도·노력도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 가능) |    |
|                 | 10부 이내         |   | 20 |
| 1부 추가당 (11부 이상) | 0.3            |   |    |

- ※ 교육훈련 정책·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수당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등의 기초연설, 주제발표자에게는 50,000원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분임지도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초빙시에는 강사의 등급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가’ 항목의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 단, 고위정책과정 정책과제보고서의 경우 단체(분임·팀 등)보고서 지급기준 적용

## 라. 지급특례

| 구 분                  | 특례사항   |         | 비고   |
|----------------------|--|---------|--|
| 단 체<br>예술공연          | 지급기준   | 지급액(만원) | ※5인이상 또는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단체예술공연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br>※1인 공연 시 일반강사 지급기준 적용 |
|                      | 2인~5인(1시간)   | 50      |  |
|                      | 6인~10인(1시간)  | 60      |  |
|                      | 11인 이상(1시간)  | 70      |  |
| 강의시간 산출              | ○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br>○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  |
| 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경우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br>-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br>○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br>○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         |  |
| 보조강사                 |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br>○전문 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만 인정 |         | ※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대한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감액지급 가능  |

## 2. 초빙강사여비

- 강사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함.
- 단,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 및 별표9에 의거 별표9의 4 또는 5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강사의 여비지급등급은 아래와 같이 정함.
  -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해당하는 직위에 맞추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지급
  -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일반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적용

### 3. 원고료 지급기준

| 구분             | 지급기준  |            | 비고   |
|----------------|---|------------|--|
| 지급단가           | 12,000원 / A4 1면   |            |  |
| 지급한도<br>(기준면수) | 강의교재(안)   | 6면 / 강의시간당 | 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내 지급 가능   |
|                | 코스웨어 원고<br>일반책자 등   | 강의시간 제한없음  |  |
| A4 1면<br>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br>※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
| 지급특례           | ○강의 교재(안)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A4 1면당 50,000원 또는 편당 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  |
| 수정원고<br>등      | ○기준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br>- 70% 초과 수정시 : 전체 지급<br>- 30~70% 수정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br>- 30%미만 수정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br>※복사원고, 표지,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불포함 하되,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산입<br>※부교재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 ※다만,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지급 가능                            |

§부교재: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배부한 자료를 통칭

### 4.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

- 시험시행 운영수당은 인사혁신처의 매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50% 수준으로 교육운영계획으로 기준을 수립하여 지급하되, 교육의 특성 및 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조정은 과정운영계획 수립시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원장 승인후 시행

## 1. 강사수당 지급기준

##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 구분   | 대상   | 지급액   |
|------|--|---|
| 특별강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현직 장관(급)</li> <li>· 전·현직 대학총장(급)</li> <li>· 전·현직 국회의원</li> <li>·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li> <li>· 대기업 총수(회장)</li> <li>· 국영기업체 사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1시간 40만원</li> <li>· 초과 매시간 30만원</li> <li>· 시간보상수당 30만원</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현직 차관(급)</li> <li>·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1시간 30만원</li> <li>· 초과 매시간 20만원</li> <li>· 시간보상수당 20만원</li> </ul> |
| 일반강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li> <li>·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li> <li>·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li> <li>· 정부출연 연구기관장</li> <li>·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li> <li>·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li> <li>·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li> <li>·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li> <li>·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li> <li>·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1시간 25만원</li> <li>· 초과 매시간 12만원</li> <li>· 시간보상수당 12만원</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li> <li>· 전·현직 4·5급 공무원</li> <li>· 중소기업체 임원급</li> <li>·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li> <li>·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li> <li>·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li> <li>· 원어민 어학 강사</li> <li>·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1시간 13만원</li> <li>· 초과 매시간 8만원</li> <li>· 시간보상수당 8만원</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li> <li>· 외국어, 전산 등 강사</li> <li>·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지방행정연수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1시간 8만원</li> <li>· 초과 매시간 5만원</li> <li>· 시간보상수당 5만원</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1시간 7만원</li> <li>· 초과 매시간 4만원</li> <li>· 시간보상수당 4만원</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1시간 5만원</li> <li>· 초과 매시간 3만원</li> <li>· 시간보상수당 3만원</li> </ul>    |

※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토의 기초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 ※ 맞춤형현지방문 교육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 ※ 시간보상수당은 연수원 이전에 따른 원거리 출강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1일 1회 해당 권역(4-가)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해 지급
-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 기존의 취미소양 2급 강사는 '15년 말까지 해당 등급을 유지하고, '16년부터는 3~4급을 적용

###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 기준 | 대 상  | 지 급 액  |
|----|--|--|
| 1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의 역량교육 경력자</li> <li>•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li> <li>• 대학 및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li> <li>•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1시간 15만원</li> <li>• 초과 매시간 12만원</li> </ul>   |
| 2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역량교육 경력자</li> <li>•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li> <li>• 대학교 조교수 이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1시간 13만원</li> <li>• 초과 매시간 10.4만원</li> </ul> |
| 3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역량교육 경력자</li> <li>• 대학 조교수 이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1시간 11만원</li> <li>• 초과 매시간 8.8만원</li> </ul>  |

###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 기 준   | 지급 요건                | 지 급 액 | 한도 기준   |
|-------|----------------------|-------|---------|
| 답변 실적 |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 2만원/건 | 최대 10만원 |
| 지도 실적 |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 2만원/건 | 최대 10만원 |

- ※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 ※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 라.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 교육 구분                 | 지급 요건   |
|-----------------------|---|
| 외국공무원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li> <li>※ 단, 시간보상수당은 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li> </ul>                        |
| 해외 현지방문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li> </ul>  |
|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60% 지급</li> <li>※ 단,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 지급</li> </ul> |

### 마.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 구 분   | 실적 기준             | 지 급 액           | 한도 기준   | 비 고                                |
|-------|-------------------|-----------------|---------|------------------------------------|
| 대면지도  |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 일반강사 수당 지급기준 준용 | 4시간 범위  | -                                  |
| 온라인지도 | 질의에 대한 답변         | 1만원/건           | 최대 20만원 |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 |
|       | 연구과제 추진지도         | 2만원/건           | 최대 20만원 |                                    |

## 바. 자문 및 심사수당

| 구분   | 실적 기준                           | 지급액                            |
|------|---------------------------------|--------------------------------|
| 자문수당 |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br>T/F 자문 역할 수행자 | • 최초 1시간 10만원<br>• 초과 매시간 10만원 |
|      |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 • 1회당 10만원                     |
| 심사수당 | 내용 심사수당                         | • 1부당 2만원                      |
|      | 발표 심사수당                         | • 시간당 6만원                      |

※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2. 원고료 지급기준

###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 기준   | 세부 요건   |
|------|---|
| 대상자  |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
| 대상원고 |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br>•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
| 지급한도 |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br>•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 원고 형식 | 지급 규격  | 지급액           |
|-------|--|---------------|
| A4 용지 | •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br>•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1면당 13,000원   |
|       | • 1면 기준 300단어  | 1면당 13,000원   |
| 파워포인트 | •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2면당 13,000원   |
| 원고지   | •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 3.5매당 13,000원 |

※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 구분                      | 기준           | 지급 비율            |
|-------------------------|--------------|------------------|
| 기존 원고 활용                | 30% 미만 수정    | 미 지급             |
|                         | 30~70% 미만 수정 | 50% 지급           |
|                         | 70% 이상 수정    | 100% 지급          |
| A4 용지 1/2 이하            | 20줄 1면으로 환산  | 각 원고를<br>합산하여 지급 |
|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 10행을 1매로 환산  |                  |
|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              | 30% 지급           |
|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              | 미 지급             |



### 3. 여비보상 지급기준

####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지급 대상        | 지 급 액   |
|--------------|---|
| 전북 지역 외래강사   | • 2만원 (관용차량 이용 시 50% 지급)                                      |
| 전북 지역 외 외래강사 |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준용<br>•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
| 현지방문교육 강사    |   |
|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준용  |

※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 4.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 가.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한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 권역  | 지역 구분                                  | 지급 여부 |
|-----|--|-------|
| 1권역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 미 지급  |
| 2권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 지 급   |

####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 강의시간 | 1시간 이하 |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
|------|--------|-----------------|-----------------|-----------------|
| 산출기준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 강의 시간  | 출강 인원          | 지 급 액 |
|--------|----------------|-------|
| 2시간 미만 | 5인 이하          | 50만원  |
|        | 6인 이상 ~ 10인 이하 | 70만원  |
|        | 11인 이상         | 90만원  |
| 2시간 이상 | 5인 이하          | 70만원  |
|        | 6인 이상 ~ 10인 이하 | 90만원  |
|        | 11인 이상         | 110만원 |

※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 과 정         | 수강 인원             | 할 증 륜 |
|-------------|-------------------|-------|
| 1개 과정       |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 20%   |
|             | 250인 이상           | 30%   |
| 2개 이상 과정 합반 | 250인 미만           | 20%   |
|             | 250인 이상           | 30%   |

※ 할증률은 시간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5. 통·번역료 지급기준**

| 교육 구분               | 지급 요건  |
|---------------------|--|
| 외국공무원교육             |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
|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br>※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

## IV 우리구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 경비

### 1 소모성물품 구입비(201-01)

| 구 분                      |         | 기준단가            | 비 고 |
|--------------------------|---------|-----------------|-----|
| 사무용품비                    |         | 30,000원×정원      |     |
| 종 이 류                    | 복사지(A4) | 18,000원(상자당)    |     |
|                          | 복사지(B4) | 25,000원(상자당)    |     |
|                          | 증질지(A4) | 15,000원(상자당)    |     |
| 전산소모품                    | 흑백프린터   | 200,000원(대/분기당) |     |
|                          | 컬러프린터   | 800,000원(대/반기당) |     |
| 유지관리비<br>(소모품및<br>유지관리비) | 복사기     | 구입액×보유대수×5%     |     |
|                          | 모사전송기   |                 |     |
|                          | 등사기     |                 |     |

### 2 국내여비(202-01)

- ① 경비성격 : 기본업무 및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출장여비
- ② 지급기준

| 구 분          | 기 준                                   | 편성방법  |
|--------------|---------------------------------------|---|
| 기본업무추진<br>여비 | 기본업무수행을 위해 근무지내에 출장하는 자에게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 월 260,000원</li> <li>- 4시간미만 출장: 10,000원</li> <li>- 4시간이상 출장: 20,000원</li> </ul> |
| 특별사업추진<br>여비 | 실제 출장에 따라 실비보상적 경비로 최소한 지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0원×인원수×기간(4시간미만)</li> <li>20,000원×인원수×기간(4시간이상)</li> <li>(월정액 지급 불가)</li> </ul> |

### 3 급량비(201-01)

#### ① 경비성격

- 정규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 설정근거 :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구 분             | 기 준  | 편성방법                                     |
|-----------------|--|--|
| 기본업무수행<br>특근매식비 |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자에 대한 급식 제공 | ◦ 1인 : 월 140,000원 이내<br>- 1식 단가 : 7,000원 |
| 특별사업추진<br>매식비   | 공휴일 2시간이상 근무하는자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을 요하는 자    | ◦ 7,000원×근무 인원수×기간                       |

### 4 위원회 운영수당(201-01)

| 구 분      | 기 준   | 편성방법   |
|----------|---|--|
| 위원회 운영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은 직접 자기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li> <li>◦ 초과는 2시간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료(2시간미만) : 70,000원</li> <li>◦ 추가료(2시간이상) : 30,000원</li> </ul> |